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9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위성곤 · 허 영 · 홍기원
박지원 · 이용선 · 이건태
신정훈 · 박균택 · 진성준
김영배 · 박정현 · 강득구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체계적 심사와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미래전략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둔다.

1.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

②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⑥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 ①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1.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
2. 정책 시뮬레이션·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3.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
4. 해외 입법·제도 비교, 국제협력 동향 등 참고연구
5. 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

② 국회미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계획과 일정을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제출된 연구결과의 전문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연구수행에 필요하면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이 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력의 구체적 절차·방식 등에 관
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6조의4(미래전략특별위원회)</u> <u>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둔다.</u> <u>1.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관한 사항</u> <u>2. 국가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에 속하는 사항</u> <u>②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으로 한다. 이 경우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u> <u>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u>

<신 설>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의5(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력) ①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1. 미래환경 전망, 시나리오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전략분석 연구
2. 정책 시뮬레이션·영향분석 및 장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

토

3.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분석 및 의제화 지원

4. 해외 입법·제도 비교, 국제협력 동향 등 참고연구

5. 그 밖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사항

② 국회미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구계획과 일정을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제출된 연구결과의 전문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연구수행에 필요하면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이 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력의 구체적 절차·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